

8월 '3연속' 규제혁신 소통 나선 한 총리, 규제 타파 '끝까지 쟁긴다'

- 한 총리, 경제계 대표들과 '모두의 성장' 위한 규제합리화 해법 논의...“정례적 소통 약속”
- 경제단체 건의 '메가 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
-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부터 산업현장 애로, 생활 불편까지 규제개선 사례 발표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8일(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 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 (일시/장소) 8.28(금) 10:00~11:30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
- (참석자) 20명
 - 정부 : 국무총리,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차관 등 13명
 -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국경제인협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7명

-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8.12)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8.20)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 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새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서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대도약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경제 협·단체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규제합리화의 방향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산업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메가특구를 과감한 규제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규제 합리화 과정에 데이터 활용을 건의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설립이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올해 7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지방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 유연화, 연동적용 요청 권리보장 등을 건의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유예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단계별 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주식기준성과보상(RSU)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과세이연 및 비과세 특례 등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 한 총리는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한 총리는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 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규제개선 과제들도 발표했다.

-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4월30일 출범 이래 경제협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 이번 규제 개선은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 주요 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 (ESS)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ESS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ESS에 대한 일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었다.

- 먼저 2026년 9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및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아닌 대용량 배터리를 보관·관리하는 설비임에도 지붕과 벽이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고, 건폐율·용적률 및 단열기준 등을 적용하여 산업계 애로

-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2026년말까지 마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과도한 이격거리 도입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 아울러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현행 10년) 특례도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 (수소) 현재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연료전지 등)의 경우에도 상용 제품과 같은 제조허가 및 검사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2027년 3월까지 마련하여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 (로봇·모빌리티)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해 주차 편의성을 향상하고, 스마트 주차산업의 시장확대를 지원했다.

○ 현재 차량 단위로만 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을 지원한다.

* 2026년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진 예정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산업단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창고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 보관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내 유희시설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 (고압가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에 대해 법령별 상이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문이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고압가스 안전기준**(산업통상부): 누출 시 내부압력 대응을 위해 출입문은 '안쪽 방향 여닫이'
산업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 작업자의 신속한 탈출을 위해 비상구는 '바깥 방향 여닫이'

○ 이와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대피훈련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시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가 완료된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하기로 하였다.

*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26.11월)

□ (환경)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은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발열량 기준 적용으로 보조연료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부의 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부의 도급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편의와 권익 향상>

□ (생활편의)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 이와 함께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하거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 (외국인 고용)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또한 현재 전문인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함이 없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성과들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 3분기에는 보다 핵심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정례적으로 경제 협·단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이날 제시된 여러 제언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붙임 1 : 주요개선 10대 과제

붙임 2 : 주요개선 과제 주요 내용

붙임 3 :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계획

담당 부서 < 총괄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책임자	과 장 윤태수 (02-2196-4020)
		담당자	과 장 고현웅 (02-2196-4030)
담당 부서 < ESS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책임자	사무관 이형철 (02-2196-4011)
		담당자	과 장 김기열 (044-203-3935)
		담당자	서기관 안성보 (044-203-3926)
담당 부서 < ESS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심재욱 (044-203-3921)
		담당자	과 장 김동준 (044-201-3755)
담당 부서 < ESS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책임자	사무관 김재훈 (044-201-4082)
		담당자	과 장 김용운 (044-203-3984)
담당 부서 < 수소용품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책임자	사무관 유영신 (044-203-3988)
		담당자	과 장 김용운 (044-203-3984)
담당 부서 < 주차로봇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책임자	사무관 고건우 (044-203-3985)
		담당자	과 장 김유진 (044-201-3364)
담당 부서 < 전기차배터리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사무관 박경섭 (044-201-3365)
		담당자	과 장 박용선 (044-201-3817)
담당 부서 < 고압가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책임자	사무관 박응민 (044-201-3839)
		담당자	과 장 박윤경 (044-202-8850)
담당 부서 < 고압가스 >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책임자	사무관 민영성 (044-202-8852)
		담당자	팀 장 정종윤 (044-203-5180)
담당 부서 < 플레이어스택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책임자	사무관 강민구 (044-203-5181)
		담당자	과 장 서민아 (044-201-6900)
담당 부서 < 유해화학물질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책임자	사무관 김우리 (044-201-6911)
		담당자	과 장 손명균 (044-201-6831)
담당 부서 < 마이데이터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책임자	사무관 박동혁 (044-201-6832)
		담당자	과 장 이택길 (044-205-2802)
담당 부서 < 부동산 중개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사무관 박정훈 (044-205-2813)
		담당자	과 장 안진애 (044-201-3434)
담당 부서 < 외국인 전문인력 >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사무관 양대모 (044-201-3438)
		담당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5)
			사무관 김진겸 (02-2110-4067)

기업현장규제애로 10대 주요개선과제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산업현장 규제 개선·생활불편 해소
기업 현장과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10대 개선과제**

1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1

ESS 규제 패키지 개선



ESS산업 입지부터 안전관리까지
규제 전반 종합 개선

ESS 산업 활성화입지
불확실성 해소

2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규제 완화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별도 안전기준 제정

수소 신기술 개발 신속 지원

3

주차로봇 주차장 설치 범위 확대



공동주택 주차로봇 설치 허용

주차 편의 향상·관련 산업
활성화

4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마련

배터리 활용
신산업 추진·전기차 보급 활성화

2 산업 현장 규제 개선

5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기준 명확화



비상주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안쪽 개방 가능하도록 명확화

현장 혼선 최소화·산업현장 안전 강화

6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 배출기준 합리화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 합리화

보조연료 절감·온실가스 감축

7

유해화학물질 도급 중복신고 개선



기후부·노동부 중복 신고 절차 개선

행정부담 완화·안전관리 집중

3 생활 불편 해소

8

보험 청구용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보험 청구 편의 향상

9

부당한 공동중개 배제행위 개선



기 발의된 담합 행위
금지 법안 신속 통과 지원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확립

10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사전 가이드 마련



외국인 채용 가이드·비자 발급
체크리스트 배포

해외 우수인재 국내 채용
가능여부 예측 가능성 제고

1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1.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기준 명확화 기후부·국토부

- ▶ **(현황)**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 등)에 대한 「건축법」 상 기준이 모호하여 자자체로 「건축법」을 상이하게 판단·적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로 분류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사업자의 행정부담 증가*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적용 및 취득세·재산세 발생 등
- ▶ **(개선)** 지자체(허가권자)가 ESS 컨테이너에 대해 법적 분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후부·국토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예정('26.9월)
- ▶ **(기대효과)** 지자체 상이한 인·허가 해석 해소, 사업자 인허가 비용 절감

2. 지자체별로 상이한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 마련 기후부

- ▶ **(현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저장설비인 ESS**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 별로 **이격거리 기준을 달리 적용**해서 입지 간 편차* 발생
* (제주도) 이격거리 없이 설치·운영 (전남 신안군) 주거밀집지역·관광지 등으로부터 300m 이상
- ▶ **(개선)** ESS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26.6~11월), 가이드 마련·배포(~'26.12월)
- ▶ **(기대효과)** 지역 간 ESS 사업 입지 편차 및 불확실성 해소

3.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 특례 도입 기후부

- ▶ **(현황)** ESS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약 15년 이상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업 구조이나, **현행 국공유지 임차기간이 10년 범위** 내로 되어 있어 산업 활성화 저해
*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결합된 형태의 경우 장기 임차 가능하나, 단독 ESS의 경우 근거 불명확
- ▶ **(개선)** 배터리 수명 등 ESS 사업영위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 임차를 허용하고 있는 유사사례(재생에너지설비 최장 20년) 등을 고려 시, 임차 기간 제한 완화 필요성 인정
- ▶ **(기대효과)** 입지 갈등이 적은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ESS 산업 활성화

4. ESS 사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기후부

- ▶ **(현황)** 일정 규모 이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비상주 대행이 가능하나, ESS는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상주 근무에 어려움
* 발전용량 3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비상주) 형태 선임 가능
- ▶ **(개선)** 연구용역 ('26. 9~11월) 완료 후 시행규칙 개정 예정('27년上)
- ▶ **(기대효과)** 관리비용 감축으로 ESS 산업 활성화

5.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안전기준 제정 및 규제 완화^{기후부}

- ▶ **(현황)** 수소용품 연구개발 시에도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 시 허가가 필요하고 수소용품 인증기준(KGS Code) 충족해야 해, 연구개발용 연료전지 제조허가 및 검사로 인해 개발이 지연
- ▶ **(개선)** 안전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규제 합리화 방안 도출 예정(~'27년)
- ▶ **(기대효과)** 수소 신기술 제품·설비 개발 시 신속 허가 및 검사 가능

6.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가능 주택 범위 확대^{국토부}

- ▶ **(현황)** 주차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주차장치'는 기계식주차장치로 정의되며, 일반적인 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에는 설치 불가
 - ※ 주차로봇의 공동주택 내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주차로봇에 대한 운영 세부사항 및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규칙* 개정 완료('26.7월)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개선)** 공동주택에 주차로봇을 이용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토록 관련 규정 개정
- ▶ **(기대효과)**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 편의성 향상과 스마트 주차기술 확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7.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제^{국토부}

- ▶ **(현황)**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단위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구분하여 소유권을 등록하기가 곤란
- ▶ **(개선)** 전기차 차체-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기반의 제도 운영 실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부여 완료('26.5월), 소유권 분리에 따른 리콜, 교환·환불 등 자동차관리제도 개선 제도화 추진 등을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에 포함('26.2월)
- ▶ **(기대효과)** 배터리 소유권 분리제의 제도적 기틀 마련으로 배터리 활용 신사업 추진에 긍정적 역할 및 구매 초기부담 완화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

2 산업현장 규제 개선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시설구역 내 창고시설 확보 허용^{산업부}

- ▶ **(현황)** 산업단內 입주기업이 생산확대에 따라 완제품 보관장소를 추가로 확보하려 해도, 창고 단독확보가 제한(제조기능 유지에만 방점, 제조시설 증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만 가능)
 - ※ 창고업 입주가 허용되는 지원시설구역내 건축물은 낮은 층고와 출입구 구조로 이용불가
- ▶ **(개선)** 분리된 필지에 있는 다른 공장의 일부공간을 임차하여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는 지침 개정 추진('26년下)
 - * 산업단지관리지침(제9조제6항)
- ▶ **(기대효과)** 한시적 보관수요변화에 탄력대응, 산업단內 유휴시설 이용효율화

2. 고압가스 저장시설 문 설치기준 명확화^{노동부 · 산업부}

- ▶ **(현황)**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에 대해 법령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어 현장 혼선 발생
 - * 고압가스 안전기준(산업부): 가스누출 시 내부압력 대응을 위해 출입문 '안쪽 방향 여닫이'
 - 산업안전보건규칙(고용부): 작업자 신속한 탈출을 위해 비상구 '바깥 방향 여닫이'
- ▶ **(개선)**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은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 **(기대효과)** 반도체 Fab 시설 변경 등 불필요한 혼란 최소화를 통한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3.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한 중복적인 구조검사 규제 개선^{산업부}

- ▶ **(현황)** 고압가스 저장소 방호벽 시공 시 공사감리자와 가스안전공사가 철근 직경, 벽체 두께 등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 검사
- ▶ **(개선)**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와 고압가스법 검사항목 중 유사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26.11월)
 - * 가스 상세기준(KGS Code)
- ▶ **(기대효과)** 공사감리와 현장검사의 유사항목 대체로 중단기간 최소화에 따른 공기 단축과 조기 생산 및 비용절감 효과 발생

4. 플레어스택의 운전 특성을 고려한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 합리화^{기후부}

- ▶ **(현황)** 비상·간헐적으로 운영하는 굴뚝시설(플레어스택)에도 일반적인 유해가스 저감시설의 발열량 기준 등을 적용하여, 기준 적용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 증가 및 추가 배출 등 역효과 발생 가능, 측정·분석 지연으로 인해 실시간 대응 등 곤란
- ▶ **(개선)** 플레어스택의 운전특성을 반영하여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을 합리화
 - ※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예정('26년下)
- ▶ **(기대효과)** 공정 효율화 및 보조연료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감축

5.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관련 중복 신고 규제 개선^{기후부}

- ▶ **(현황)**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급 시 노동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부에도 도급신고를 중복으로 해야 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
 - * 상시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
- ▶ **(개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 수리로 간주하는 법 개정* 추진
 -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의원입법안 기상정('25.11 위원회 상정)
- ▶ **(기대효과)** 비용절감 및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집중

3 생활불편 해소

1.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포함^{행안부}

- ▶ **(현황)** 보험 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를 활용 중이나, 계약 관계자 확인 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조회가 불가해 소비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
- ▶ **(개선)**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보험업계 등 이용 기관 수요에 대응하여 법원행정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유량 상향 조정하였고('26.3월), 보험업계와 실무 협의를 통해 단계적 밀착형 업무지원 체계 구축 예정('26년下)
- ▶ **(기대효과)** 공공 마이데이터에 가족관계증명서 포함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

2. 부동산중개시장 내 공동중개 배제행위 규제 강화^{국토부}

- ▶ **(현황)** 신입 또는 친목회 비소속 공인중개사가 고객 모집 시 기존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가 공동중개를 거부하거나, 지역회 소속 중개사들이 플랫폼 이용 중개사를 배제하는 등 중개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이 높은 상황
 -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체 구성을 통한** 특정 물건 제한, 타 중개사 배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체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은 상황
- ▶ **(개선)** 공정한 중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 발의(‘26.2월)된 담합행위(부당한 공동중개 제한) 금지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전문성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 **(기대효과)** 공인중개사 간 부당한 담합행위 근절 ⇒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확립

3.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사전 판단기준 마련^{법무부}

- ▶ **(현황)** 외국인 전문인력(E-7)은 **채용 이후 체류자격을 심사하게** 되어 있어 기업이 채용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
- ▶ **(개선)**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 및 자가 진단용 체류자격별 비자 발급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26.9월)
- ▶ **(기대효과)** 사전에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채용 가능여부 파악토록 예측가능성 제고

4. E-7 비자 외국인 온라인 체류기간 연장 허용^{법무부}

- ▶ **(현황)** 특정활동(E-7) 비자 소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여 신원 및 고용관계가 안정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이 필요하여 시간·비용부담 발생
- ▶ **(개선)** 특정활동(E-7) 중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27년上)
- ▶ **(기대효과)** 기업의 우수 인재 적시 확보 지원 및 민원인 편의 증진

□ **개 요**

○ 일시/장소 : '26. 8. 28(금) 10시 /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

□ **참 석 자** : 20명(총리님 포함)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최태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손경식), 한국경제인 협회장(류진), 한국무역협회장(윤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최진식), 벤처기업협회 회장(송병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오기웅) 등 7명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남궁범, 박용진, 김태유),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김민성) 등 6명
- 산업부 1차관(문신학), 복지부 2차관(이형훈), 노동부 차관(권창준), 중기부 1차관(노용석), 공정위 부위원장(남동일) 등 6명

□ **진행순서(안)**

사회 :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3	03'	■ 입장 및 기념촬영	
10:03~10:05	02'	■ 개회 및 국민의례	
10:05~10:10	05'	■ 인사말씀	국무총리
10:10~10:25	15'	■ 발표	규제조정실장
10:25~11:25	60'	■ 토론 <주제> 경제대도약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	
11:25~11:30	5'	■ 마무리 말씀	국무총리